

특화사업단[팀] 설치 규정

- 제 1 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제3조 3항에 따라 호서대학교의 특화사업단 [팀]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적용범위)** 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관 또는 학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 3 조 (설치)** ① 사업단은 특화사업의 목적에 따라 총장이 설치한다.
② 제1항 이외의 사업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의 목적·구성·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4 조 (조직)** ① 사업단의 장은 그 목적 및 규모에 따라 팀장 또는 단장으로 보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
② 사업단의 장을 단장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부단장, 본부장 또는 팀장 등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
③ 사업단에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위원은 사업단의 장이 위촉한다.
- 제 5 조 (사업단의 장)** ① 사업단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② 사업단의 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, 총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.
- 제 6 조 (운영)** ① 사업단은 기관책임운영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사업단의 재산 및 회계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.
③ 각 사업단은 사업단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 7 조 (해산사유)** 사업단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산한다.
1. 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
2.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
- 제 8 조 (시행세칙)**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설치·운영되고 있는 다음의 사업단은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한다.

1. 중국사업팀
2. 인도사업단
3. 노인복지사업팀
- 4.골프사업단